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2020. 12. 18.

제1차 개정 : 2023. 12.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및 정부지침 등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 및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중대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산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3. “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에서 행하여지는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공사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관계수급인 및 해당 관계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10.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이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시민”이란 공사의 사업주 및 종사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12. “안전보건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직제규정 시행요강」에 따른 안전보건담당부서를 말한다.

1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 령, 규칙 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정부지침은 별도의 표현이 없는 경우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의 종사자 및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공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이하 “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모든 종사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사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공사 내 모든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자들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이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종사자의 생명을 지

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라. 지속적으로 공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종사자

가.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이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종사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총괄·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조직)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는 안전보건담당 본부장(이하 “담당본부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공사의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장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별도의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조언
2.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6.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7.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에 따른다.

⑤ 공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산안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 대하여 별도의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조언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지도·조언
3.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4.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다만,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한다)
 - 가.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영양 지도 및 관리
 -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
-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9.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공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에 따른다.
- ⑤ 공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산안법에 따라 지정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나. 9명 이내의 근로자

④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장

2. 사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안전관리자

나. 보건관리자

다. 9명 이내의 본부장 및 부서장

⑤ 근로자대표와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각각의 위원이 있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각각의 대리자를 지명하여 각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근로자대표와 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쳐진 의안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결과 등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5.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6.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7.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8.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① 공사는 매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담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으로 구분한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③ 공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제2항의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육) 공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6조제2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8조(물질안전보건교육) 공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6조제2항의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9조(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제16조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0조(안전보건교육강사) 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안전보건교육강사로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기록·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이나 기타 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2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① 공사는 매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③ 공사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23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공사는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공사는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전기설비 안전) 공사는 전기설비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 방지조치
2.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3. 필요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사용 및 유지·관리
4. 정전작업 전·후 전로 차단 및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감전방지 안전수칙 준수
5.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수칙 준수
6.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및 정기점검

제26조(안전검사) ① 공사는 공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작업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공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공사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9조(작업중지 등) 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들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총괄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공사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작업 등 세부사항은 담당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3조(교통재해 예방) ① 공사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정해진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정해진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비상조치계획) 공사는 재해·재난 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피난 및 대응훈련) 공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36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공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37조(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규정」 등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공사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

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사는 작업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공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질병자의 근로금지) 공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조현병·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 등 이에 준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공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

에 가급적 다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공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다만, 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종사자가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휴게시설은 종사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따라 적절한 공간 내에 가구와 비품을 갖추고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47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공사는 산안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적격 수급인 선정)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공사는 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담당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공사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51조(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52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일시적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67조 서식의 안전보건 의무 준수 서약서 징구
2. 공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교육의 실시 확인

② 공사는 종사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53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공사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4조(사고 시 조치) 공사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사고 조사 및 보고) ① 총괄부서는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괄부서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 및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6조(사고대장) 총괄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업무보고) ① 총괄부서는 사고 발생 시 원인 및 현황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결과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종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58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9조(위험성평가 교육) 공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60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등)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주기, 문서화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담당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61조(위험성평가 문서화) 공사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5.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사항

제9장 보칙

제6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

제63조(안전보건문화) 공사는 전사적 안전보건 의식 제고 및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제안제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64조(포상)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 관련 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65조(징계) ① 관련 법령이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주의 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② 주의 또는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66조(문서보존연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 6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에 한하여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과 관련된 경우 30년간 보존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3.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67조(변경절차) ① 공사가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작성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사의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추두고 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8조(준수) ① 공사의 종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9조(서식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결과표 및 안전보건 의무 준수 서약서 등의 서식의 제정 및 개폐는 총괄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부칙(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요강은 폐지한다.

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